

# 경조사비 지급 내규

2007.10.01. 제정  
2019.06.01. 개정

**제1조(지급 대상)** 경조사비 지급 대상은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(이하 본교) 교직원 및 학교법인 혁제학원(이하 법인) 직원으로 한다. 단, 재학생 및 졸업생중 학교 발전에 기여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화환을 지급할 수 있다.

**제2조(지급 금액)** 경조사비는 다음에 의거하여 지급한다.

## 1. 지급 금액

항목		경조사비(원)	화환
결혼	본인	300,000	0
	자녀	300,000	0
사망	본인	1,000,000	0
	배우자	1,000,000	0
	부모	500,000	0
	자녀	300,000	0
	자녀의 배우자	300,000	0
	배우자 부모	300,000	0

2. 화환은 본교 총장 명의로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본 내규는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본 내규는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